

朝鮮後期 濟州地方 田畝賣買文記의 研究(Ⅱ)

— 西歸浦市 大浦里을 중심으로 —

高 昌 錫*

〈차 례〉

머 리 말

I. 姜氏宅 文書

II. 李氏宅 文書

III. 綜合分析

맺 음 말

머 리 말

이 글은 西歸浦市 河院洞에 거주하는 姜成澤氏와 大浦洞에 거주하는 李智煥氏가 소장하고 있는 田畝賣買文記 총 63건을 정리한 것이다. 강성택씨가 28건, 이지환씨가 35건을 각각 소장하고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朝鮮朝 景宗 3년(1823)부터 隆熙 원년(1907)까지 약 180년에 걸친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80년 전부터 100년 전까지 작성되었던 문서이다. 따라서 이 글의 연구범위도 이 시기에 국한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서귀포시 옛 대포리 일대가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하는 바는 이 시기 농촌사회의 토지소유의 관념은 물론, 토지의 취득경위와 매도사유, 전답의 교환수단, 재배작물과 재배면적 등을 통하여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生活史를 살피는데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서술의 순서는 편의상 資料紹介의 차원에서 먼저 두 집안의 文記를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 하나 하나에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다음으로 田畚賣買文書 총 63건에 대한 종합적인 分析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여기서는 자료분석에 앞서 전답매매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人的 사항을 파악해 보기 위해 두 집안의 家系圖를 작성하였다. (자료의 [] 표시는 오자, () 표시는 누락 글자임)

I. 姜氏宅 文書

(01) 雍正元年 癸卯 伍月初壹日 前別監姜德鳴前(41.5cm×34.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木綿肆疋貸用後 價本段 北童山員 婢山生處買得田 皮車壹石付只 二合 四標段 東女取恒·金召史畚 西高萬隆·金連達畚 南安興田 北奴連黃 爲等如分明田庫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或有雜談者是去等 以此文告官下正事

田主 自筆 吏房 元萬寬(手決)

이 明文은 雍正 원년 癸卯, 즉 景宗 3년(1723) 5월 초1일에 田主人 吏房 元萬寬이 前 別監 姜德鳴에게 자필로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要用所致로 木綿 4필을 빌려 쓴 뒤, 婢 山生에게 買得한 北童山員의 皮車 1섬 부치기 받을 영원히 賣渡한다는 내용이다.

(02) 雍正六年 二月二十一日 姜相周許[處, 前]明文(33.5cm×27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同人前 正木伍拾尺貸用後 價本段 祖上傳來耕食是在 汝朴只員 皮車肆斗付 東小路 西姜彭壽田 南元汝龍田 北高山秀田 四標分明田庫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之弊是去等 以此文下正事

田主 奴 厚連(左手寸)

證人

筆執 金連達(手 決)

이 明文은 雍正 6년, 즉 영조 4년(1728) 2월 21일에 田主人 奴 厚連이 姜相周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要用所致로 買受人에게 正木 50尺을 빌려 쓴 뒤, 조상 대대로 전해 오며 갈아먹던 汝朴只員의 皮牟 4말 부치기 밭을 賣渡한다는 내용이다.

(03) 雍正拾壹年 癸丑 五月初九日 姜相文處明文(35.5cm×25.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人處捌升木伍拾尺 准計奉[捧]用後 價本段 祖上流來 耕食是在 汝朴只員 皮牟柒斗付只 四標段 東南林升吉田 西金昌白田 北小路 四標爲等(如)分明田庫 同人亦永永放賣爲乎矣 本文段 他田并付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同生子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爲臥乎事

田主 婢 上禮(右手寸)
證人 奴 次三(左手寸)
筆執 張起□(手 決)

이 明文은 雍正 11년 癸丑, 즉 영조 9년(1733) 5월 초9일에 田主人 婢 上禮가 姜相文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要用所致로 買受人에게 捌升木 50척을 계산하여 받은 뒤, 조상 대대로 전해 오며 갈아먹던 汝朴只員의 皮牟 7말 부치기 밭을 영원히 賣渡하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04) 雍正拾參年 乙卯 拾壹月拾伍日 姜尙周處明文(44.5cm×36.5cm)

右明文事段 矣祖上流來 皮牟柒斗付田庫 伏在於風浦員是如乎 同人遭其父喪 地占厥田 葬用之後 價本段 正木參正拾尺捧上後 外田并以 永爲許給爲乎矣 同田四標段 東元德載田 西矣田 南林升吉田 北李仁時田 四標分明田庫 成文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爲乎事

田主 高次三(左手寸)
證人 金論男(左手寸)
筆人 鎮撫 姜相齊(手 決)

이 明文은 雍正 13년 乙卯, 즉 영조 11년(1735) 11월 15일에 田主人 高次三이 姜相周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조상 대대로 전해 오는 皮牟 7말 부치기 밭이 風浦員에 있는데, 買受人이 父親喪을 당하자 그 밭에 산소를 마련하여 장사를 지낸 뒤, 그 값으로 正木 3필 10척을 받은 뒤, 外田과 함께 영원히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05) 乾隆元年 丙辰 二月二十四日 姜相周前明文(43cm×34.5cm)

右明文事段 矣身以八所馬牧子 同色條良中 同人前 壯雌馬壹疋 折價正木貳疋 貨出納封後 他無報給之勢乙仍于 父邊流來耕食是在 東古水員 皮牟壹石落只 東任致充田 南洪渭用田 西奴汝起田 北奴論男田 四標分明田庫 以貳疋價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庫并付 不得許與是去乎 日後如有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告官卞正爲乎乙事

田主 寺奴 德山(左手寸)
證人 外姪子 寺奴 哲得
筆執 鎮撫 林就蕃(手決)

이 明文은 乾隆 원년 丙辰, 즉 영조 12년(1736) 2월 24일에 田主人 寺奴 德山이 姜相周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이 몸은 八所場의 馬牧子인데, 同色條로 買受人에게 壯雌馬 1필을 정목 2필로 값을 정하고 꾸어서 바친 뒤, 그 값을 달리 갚아줄 수 없는 형편이므로, 조상 대대로 전해 오는 東古水員의 皮牟 1 섬지기 밭을 2필 값으로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06) 乾隆陸年 辛酉 正月貳拾日 安次石處明文(41cm×38cm)

右明文事段 年前分家 夫臨喪時 護喪之物及墓基價 報債無路 同人處 正木參疋 貨出 以報之後 價本段 矣舅邊衿得是在 開要堂員 粟種壹斗伍升付只田 四標段 東及南小路 西康碩輔田 北元萬紀田 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爲乎矣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若有雜談之弊是良置 以此文記告官卞正事

田主 婢 衣良(右手寸)

訂人 崔次寬(左手寸)

筆執 姜相齊(手 決)

이 明文은 乾隆 6년 辛酉, 즉 영조 17년(1741) 정월 20일에 田主人 婢 衣良이 安次石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年前에 分家하여 男便喪을 당하였을 때, 護喪할 물건과 墓基 값의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正木 3필을 貸出하여 갚은 뒤, 그 값으로 舅邊에 衿得한 開要堂員의 粟種 1말 5되 부치기 받을 영원이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07) 乾隆拾壹年 丙寅 伍月初捌日 妻嫗姜相周處明文(49.5cm×31.5cm)

右明文事段 我以武士 無有騎馬故 同人處 騎馬壹疋捧騎是遣 添價木二十尺捧上後 價本段 妻邊衿得是在 汝朴只員 皮牟拾參斗付只 東金南采田 西金鼎九田 南賣者田 北康碩輔田 四標分明田庫 永永報給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之弊有去等持此文下正事 .

田主 金信白(手決)

筆執 異姓叔父 元萬寬(手決)

이 明文은 乾隆 11년 丙寅, 즉 영조 22년(1746) 5월 초8일에 田主人 金信白이 妻嫗 姜相周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나는 武士로서 騎馬가 없기 때문에 買受人에게 騎馬 1필을 받고 價木 20척을 더 받은 뒤, 妻邊에 衿得한 汝朴只員의 皮牟 13말 부치기 받기로 영원이 갚아준다는 내용이다.

(08) 乾隆拾陸年 辛未 貳月初伍日 四寸兄姜相周前明文(40.5cm×36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前角鹿皮壹令 正木貳拾尺用下後 價本段 庫要堂員 妻矣衿得田 粟種伍升付田庫 四標段 東玄泰瞻田 西金萬錫田 南元德忠田 北元武發田 四標分明田庫 同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此後良中 子孫族類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田主 高世祥(手決)

筆執 姜進弼(手決)

이 明文은 乾隆 16년 辛未, 즉 영조 27년(1751) 2월 초5일에 田主인 高世祥이 四寸兄 姜相周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角鹿皮 1令, 正木 20척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庫要堂員의 妻의 衿得田인 粟種 5되 부치기 받을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09) 乾隆貳拾貳年 丁丑 柒月初捌日 異姓四寸姜相周處明文(42.5cm×36.5cm)

右明文事段 吾有報債之事故 同四寸弟處 正木肆疋貸用後 價本段 姜得宗處買得是在 佛木堂員 粟種壹斗伍升付 四標 東小川 西林就萬母墓坐田 南李萬彥田 北梁勳國田 標內分明田庫乙 當初買文并以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類中 爭召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元武發(手決)

筆執 姜有完(手決)

이 明文은 乾隆 22년 丁丑, 즉 영조 33년(1757) 7월 초8일에 田主인 元武發이 異姓四寸 姜相周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빚을 갚을 일이 있으므로 사촌 동생에게 正木 4필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姜得宗에게 산 佛木堂員의 粟種 1말 5되 부치기를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0) 乾隆貳拾柒年 壬午 肆月貳拾壹日 姜益希處明文(38.5cm×34.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右人處 正木參匹貸用後 價本段 他無痛仍于 不得已 外片衿得流來田 伏在於立石員 粟種肆升付只 肆標段 北元德忠田 南金信白 田東買者家坐田 西小路 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爲乎等 本文記段 他田畚并付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爭望之弊而去等 持此文告官下呈事

田主 無證自筆執 姜老聖(手決)

이 明文은 乾隆 27년 壬午, 즉 영조 38년(1762) 4월 21일에 田主인 姜老聖이 증인 없이 자필로 姜益希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正木 4필을 빌려 쓴 뒤, 그 값을 달리 변통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外片에 衿得한 流來田인 立石員의 粟種 4되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1) 乾隆二十六年 壬午 十二月初七日 姜益希處明文(37.5cm×36.5cm)

右明文事段 矣夫(人)管[棺]子板一保 正木五十尺價 上年十二月分 貸出用下矣
出處無路乙仍于 不得以[已] 矣墓坐田 皮牟肆斗付只田 四標段 東姜進必田 西
李重新田 南同人田 北小路 標內分明田庫乙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孫類
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奴 次星(左手寸)

筆執 康致發(手 決)

이 明文의 乾隆 26년은 辛巳이고, 壬午는 英조 38년(1762)에 해당하므로 干支를 따라 바로 잡는다. 즉 이 해 12월 초 7일에 田主人 奴 次星이 姜益希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내 夫人의 棺子板 1保를 正木 50척 값으로 지난 해 12월께에 貸出하여 사용하였으되, 그 값을 마련할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내 墓坐田인 皮牟 4말 부치기 받을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2) 乾隆貳拾玖年 甲申 貳月拾壹日 姜益希處明文(45cm×38cm)

右明文事段 要用所置[致] 同人處 正木參匹貸用後 價本段 元萬寬處買得 在於
北童山員 皮牟壹石付貳合 東姜謂成田 西李重申田 南元處順田 北邊萬花田 標
分明田與 又正木貳匹價 夫衿得田 舊大路員 粟種壹斗付 東丁康道田 西林萬松
田 南李豐成田 北小路 標分明田庫乙 本文記并 永永放賣爲乎等 壹庫都許中并
付 不得許給爲去乎 若有子孫中雜談之弊 至[持]此文下呈事

田主 玄氏(右手掌)

筆執 前 城將 姜老聖(手決)

이 明文은 乾隆 29년 甲申, 즉 英조 40년(1764) 2월 11일에 田主人 玄氏가 姜益希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正木 3필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元萬寬에게 산 北童山員의 두 곳을 합한 皮牟 1섬 부치기 중 한 곳은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리고, 다른 한 곳은 都許文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3) 乾隆貳拾玖年 乙酉 貳月貳拾參日 金重起處明文(21.5cm×22cm)

右明文事段 當此殺年 不勝身役米故 右人處 正木貳疋貸出要用後 報給無路乙仍于 矣身姓邊衿得是遣 西川助格員 粟柒升付只田 四標段 東姜益齊田 西私奴上男田 南大路 北姜益齊田 四標分明田庫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相爭之弊 則持文告官下正事

田主 李起白(左手寸)

筆執 池興江(手 決)

이 明文의 乾隆 29년의 간지는 甲申이고, 乙酉는 영조 41년(1765)이므로 간지를 따라 바로 잡는다. 즉 이 해 2월 23일에 田主人 李起白이 金重起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흉년을 당하여 身役米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正木 2필을 빌려 요긴하게 사용한 뒤, 그 값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이 몸의 姓邊에 衿得한 西川助格員의 粟 7되 부치기를 아주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4) 乾隆三十年 乙酉 六月十七日 姜益希處明文(38cm×34.5cm)

右明文事段 同人處 要用所致以 正木貳疋貸用後 價本段 方下浦員 皮牟伍斗付只田 四標[標]段<事> 東小路 西李順明田 南元先孝田 北梁道完田 分明田庫 本文記并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事

田主 高召吏(右手寸)

筆執 姜致發(手 決)

이 明文은 乾隆 30년 乙酉, 즉 영조 41년(1765) 6월 17일에 田主人 高召吏가 姜益希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正木 2필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方下浦員의 皮牟 5말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5) 乾隆三十一年 乙酉 六月十七日 姜益希處明文(39.5cm×35cm)

右明文事段 矣身戶下 許多所食還上 出處無路乙仍于 同人處 正木貳疋貸出後 價本段 矣父自起田 沙斤非墓基員 皮牟參斗付只田 四標段 東姜進必田 西南李

重新田 北小路 四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族類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事

田主 奴 次星(左手寸)

筆執 姜致發(手 決)

이 明文의 乾隆 31년은 간지가 丙戌이고 乙酉는 영조 41년(1765)에 해당하므로 간지를 따라 바로잡는다. 즉 이 해 6월 17일에 田主인 奴 次星이 姜益希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허다하게 꾸어 먹은 還上[환자]를 마련할 길이 없는 탓으로 買受人에게 正木 2필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아버지의 自起田인 沙斤非墓基員의 皮牟 3말 부치기를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6) 乾隆參拾壹年 丙戌 七月初一日 姜益希處明文(33cm×33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同人處 木拾捌尺貸用後 價本段 沙近非於員 牟種壹斗參升付田 四標段 東南小路 西北買者田 四標分明田庫乙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子孫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下正事

田主 自筆執 姜進弼(手決)

이 明文은 乾隆 31년 丙戌, 즉 영조 42년(1766) 7월 초1일에 田主인 姜進弼이 姜益希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木[무명] 8척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沙近非於員의 牟種 1말 3승 부치기를 賣渡하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7) 乾隆參拾參年 戊子二月二十一日 姜益姬處明文(27.5cm×24cm)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故 同人處 正木四疋貸出後 價本段 矣父相換田 廣怕員 皮牟壹石付只 四標段 東元以春田 南小路 西姜益成田 北金南彩田 四標分明爲去乎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類中 更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邊[下]正事

田主 自筆執 梁廷億(手決)

이 明文은 乾隆 33년 戊子, 즉 영조 44년(1768) 2월 21일에 田主人 梁廷億이 자필로 姜益希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正木 4필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아버지의 相換田인 廣怕員의 皮牟 1섬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8) 乾隆參拾伍年 庚寅 陸月初壹日 姜益希處明文(25.5cm×38cm)

右明文事段 連遭凶年 生道(無)路仍于 勢不得而[已] 同人處 正木肆匹半貸用後價本段 姑祖母別給 開要水員 畝粗種伍升付只 肆標段 東高世完畝 西許並畝 南官畝 北李昌顯畝 四標分明畝庫乙 本文記并 永永放賣爲乎代[矣] 日後良中 子孫中爭望之弊是去等 持此文告官下呈事

畝主 池召史(右手寸)

訂人 吳士恒(手 決)

筆執 姜老聖(手 決)

이 明文은 乾隆 35년 庚寅, 즉 영조 46년(1770) 6월 초1일에 畝主人 池召史가 姜益希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연이은 흉년으로 살아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買受人에게 正木 4필 반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姑祖母가 別給한 開要水員의 畝粗種 5승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9) 乾隆參拾陸年 辛卯 拾壹月貳拾貳日 姜益希處明文(33cm×36cm)

右明文事段 矣身荒年 資生無路乙仍于 (勢不得已) 同人處 壯雄牛壹首 及正木壹疋拾尺貸得資生(後) 矣名下衿得田 別老川員 牟種壹石付只 四標段 東買者田 西許最田 南姜先賣田 北夫世得田 標內(分明田庫)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爲乎事

田主 元氏(喪不着)

筆執 李春蕃(手決)

이 明文은 乾隆 36년 辛卯, 즉 영조 47년(1771) 11월 22일에 田主人 元氏が

姜益希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흉년으로 살아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買受人에게 壯雄牛 1首 및 正木 1필 10척을 빌려 생계를 꾸린 뒤, 내 名下의 衿得田인 別老川員의 牟種 1섬 부치기를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본 문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다. “舊文記에 先祖姜益希로부터 讓受흔 者인디 右十五落을 濟州郡 中面 道頭里 第拾參統五戶 蔡龜錫이가 引水作畚畝으로서 引水價를 確定하야 田柒斗五升落은 自己의 所有로 田柒斗五升落은 蔡龜錫의 所有로 劃定하교 讓渡文記를 成給흔(21cm×14cm) 光武拾壹年 二月三日 右所有者 姜遇靖(印) 保証人 姜智曦(手決)(연접한 곳에 大靜郡印을 찍음, 4cm×4cm)”

(20) 乾隆肆拾肆年 己亥 參月初柒日 兄姜益希前明文(31.5cm×33cm)

右明文事段 矣身緊有用處事 同兄前 正木貳疋貸出要用後 價本段 他無變通故勢不得已 衿得是在 長童山員 皮牟仇[玖]斗付 四標段 東買者田 西南姜益水田 北高信乞田 四標分明田庫 同兄前 永永報給爲乎矣 本文記 他田并付故 不得許與爲去乎 日後子孫中 或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弟 姜益成(手決)

筆執 書員 金昌大(手決)

이 明文은 乾隆 44년 己亥, 즉 정조 3년(1779) 3월 초7일에 田主인 동생 姜益成이 형인 姜益希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사용할 곳이 있어 형님에게 正木 2필을 빌려 요긴하게 쓴 뒤, 그 값을 달리 변통할 수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衿得한 長童山員의 皮牟 9말 부치기로 갚아주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1) 乾隆伍拾玖年 甲寅 貳月拾捌日 姜宗賢處明文(37.5cm×30.5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道無路乙仍于 同人處 正木參疋貸得後 正木壹疋半 兄嫂所食是遺 伍拾尺段 矣墓坐田價報給是白遺果 坐田段 里內員 白取星處買得田 皮牟壹斗付只捧上是白遺 四標段 東小路 南都家坐田 西姜益化田 北同人田 標分明田庫 永永捧上是遺 其餘正木拾貳尺段 長姪子所食分政[定]後 價本段 他

(無)卞通之勢故 不得已 西泉間員 仲兄衿付田 粟種柒升付只 田庫四標段 東姜德文田 南及西金夫貴田 北李廷采田 標分明田庫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備破闕失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同生兄弟子孫中 相爭之弊 則持此文記告官卞政事

田主 四弟 高永春(手 決)
同參 高得才(手 決)
同參 兄嫂 李召史(喪不着)
筆執 高日至(手 決)

이 明文은 乾隆 59년 甲寅, 즉 정조 18년(1794) 2월 18일에 田主人 弟 高永春이 姜宗賢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흥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는 닳으로 買受人에게 正木 3필을 빌린 뒤, 正木 1필 반은 兄嫂가 所食하고 15척은 내 墓坐田 값으로 갚았는데, 坐田은 里內員의 白取星에게 買得한 皮牟 1말 부치기를 받았으며, 그 나머지 正木 20척은 長姪子가 所食하도록 나누어 정한 뒤, 그 값은 달리 변통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부득이 西泉間員의 仲兄의 衿付田인 粟種 7되 부치기를 同人에게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분실되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2) 咸豐九年 己未 二月 日 妻甥姜用輔處明文(36.5cm×32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右人處 白木陸疋貸用 價本段 妻家衿得田 皮牟肆斗付只在於不毛巨員是在 四標段 東小路 南姜廷孫田 西康圭承田 北康召史田 標內分明 本文記并以 永爲報給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弊 則持此文憑考事

田主 李京震(手決)
筆執 姜雲岐(手決)

이 明文은 咸豐 9년 己未, 즉 철종 10년(1759) 2월에 田主人 李京震이 妻甥 姜用輔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白木 6필을 빌려 쓰고, 그 값은 不毛巨員에 있는 妻家の 衿得田인 皮牟 4말 부치기로 갚아주되, 본문기도 함께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23) 同治五年 丙寅 二月初九日 姜用輔處明文(38cm×29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右人處 白木參拾疋貸用後 價本段 水東山南邊員 流來田
車種陸斗付只 四標段 東小路 西李元益田 南梁春奉田 北李慶田 標內分明田庫
乙 同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他田并付 不得許與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若有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下呈事

田主 李邦進(手決)

筆執 梁孝倫(手決)

이 明文은 同治 5년 丙寅, 즉 高宗 3년(1866) 2월 초9일에 田主人 李邦進이 姜用輔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白木 30필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水東山南邊員의 流來田인 車種 6말 부치기를 팔아버리 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가로로 七人祖父主祭田代奉本文記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4) 同治七年 戊辰 二月初四日 姜用輔處明文(32cm×29cm)

右明文事段 吾要(用)所致故 右人處 白木參疋半用貸出後 價報[本]段 出處無路
故 無近浦員 買得田 車種貳斗付只 四標段 東小路 西金以海田 南鄭智昌 北買
者田 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并而[以] 日後若有相詰 則是文記告
官下呈事

田主 自筆執 梁春奉(手決)

이 明文은 同治 7년 戊辰, 즉 高宗 5년(1868) 2월 초4일에 田主人 梁春奉이 자필로 姜用輔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白木 3필 반을 빌려 쓴 뒤, 그 값은 마련할 곳이 없는 탓으로 無近浦員의 買得田인 車種 2말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가로로 七人祖父主祭田代奉本文記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5) 光緒元年 乙亥 四月七日 姜應仁處明文(32cm×26.5cm)

右明文事段 緊有用處故 流來田 不毛巨員 車種肆斗付 標東金伯田 西元善三田
南李哥田 北名不知田 標分明 價本段 白木陸疋半準計捧上後 右人處 永爲放賣

爲去乎 日後孫族中更言則 以此文憑考記事

田主 金光化(手決)

筆執 許 仁(手決)

이 明文은 光緒 원년 乙亥, 즉 고종 12년(1875) 4월 7일에 田主인 金光化가 姜應仁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간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流來田인 不毛巨員의 牟種 4말 부치기 값으로 白木 6필 반을 계산해 받은 뒤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6) 建陽二年 戊戌 六月二十二日 任光(秋)處明文(35cm×26.5cm)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故 右人處 錢文陸拾兩貸出用後 價報段 出處無路故 古馬金員 牟種貳斗付只 四標段 東田主田 西高性仁田 南田主田 北金丁逢田 四標分明田庫 本文記段 都許在錄故 並以許給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弊 則持此文記憑考事

田主 吳起榮(手決)

筆執 李任國(手決)

이 明文의 建陽 2년은 간지가 丁酉이고, 戊戌은 光武 2년(1898)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기는 이 해 6월 22일에 田主인 吳起榮이 任光秋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錢文 60냥을 빌려 쓴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古馬金員의 牟種 2말 부치기를 都許文에 기록된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7) 光武八年 甲辰 十二月十四日 姜遇靖處明文(35cm×23.5cm)

右明文事段 聚有用處故 右人處 錢文捌拾兩貸用後 價報段 出處無路故 吾矣買得田 古馬金員 牟種貳斗付 四標 東南吳戊松家基田 西高性仁田 北金丁逢田 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并付 許給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弊 則此文憑考事

田主 自筆 任光秋(手決)

이 明文은 光武 8년(1904) 甲辰 12월 14일에 田主人 任光秋가 자필로 姜遇靖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買受人에게 錢文 80냥을 빌린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내가 산 밭인 古馬金員의 牟種 2말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8) 大韓光武十一年 丁未 三月初十日 四寸弟處明文(33cm×44.6cm)

右明文事段 吾矣報債夥多故 右弟處 錢文壹百柒拾兩貸用後 價報段 出處無路故里內員流來田 牟種壹斗柒升付 東高處弘田 西買者家基田 南姜寅得家基田 北金生石田 標分明田庫乙 永爲放賣是遺 本文記段 都許載錄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若有更言 則持此文記憑考事

田主 從兄 姜基周(手決)

洞長 姜齊弘(手決)

筆執 金基湖(手決)

門長 姜應礪(手決)

證人 姜遇準(手決)

서두에 기록된 大韓帝國期の 光武 11년은 없고 丁未는 降熙 원년(1907)에 해당한다. 날자에 大浦(5cm×8.5cm)印이 날인되었다. 따라서 이 明文은 이 해 3월 초10일에 田主人 從兄 姜基周가 四寸 동생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文書이다. 내가 값을 빚이 많으므로 동생에게 錢文 170냥을 빌린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里內員의 流來田인 牟種 1말 7되 부치기를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Ⅱ. 李氏宅 文書

(29) 乾隆拾貳年 丁卯 參月初參日 玄萬晁處明文(44cm×36cm)

右明文事段 矣身當次[此]荒年 丐乞之人 勢不得已 右人處 正木壹正半 代[貸]出後 價本段 矣身 婢次分處買得田 開要堂員 貳庫合 皮牟十一斗付只 肆標段

東奴千中田 西北元德忠田 南李仁星田 標內分明田庫 及本文記并 右人處 永永
許給爲去乎 日後 或有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奴 順完(左手寸)

筆執 任就武(手決)

이 明文은 乾隆 12년 丁卯, 즉 英祖 23년(1747) 3월 초3일에 田主人 奴 順完이 玄萬晃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이 몸이 흉년을 당하여 빌어먹는 사람으로 하는 수 없이 買受人에게 正木 1필 반을 貸出한 뒤, 값은 이 몸이 婢 次分에게 산 開要堂員의 두 곳을 합한 皮牟 11말 부치기를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30) 乾隆貳拾貳年 丁丑 六月初九日 李舜明處明文(43cm×33.5cm)

右明文事段 當此凶年 許多食口 生路無路故 同人處 正木貳疋價 貸出後 他無報給乙仍于 江汀箕水員 衿得畚 貳片 租種伍升付 南金付見畚 東李中宅畚 西金又奉畚 北李寺集畚 四標分明 同畚庫乙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族類中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畚主 自筆執 李相成(手決)

이 明文은 乾隆 22년 丁丑, 즉 英祖 33년(1757) 6월 초9일에 畚主人 李相成이 自筆로 李舜明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흉년을 당하여 수두룩한 食口가 살아 나갈 방법이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正木 2필을 대출한 뒤, 달리 값아 줄 수 없는 탓으로 江汀 箕水員의 衿得畚 두 파니 租種 5되 부치기를 아주 팔아 버린다는 내용이다.

(31) 乾隆二十六年 辛巳 十一月十六日 高益謙處明文(40.5cm×35cm)

右明文事段 矣父母兩山 既已埋窆於同人田是如乎 山價段 他無變通之路是乎等 以 先歸員 流來田 皮牟參斗付只 四標段 東川 西邊星休田 南川 北大路 標內分明田庫乙 右人處 永永報給爲去乎 日後 子孫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以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鄭仁桓(手決)

證人 康致發(手決)

筆執 文永長(手決)

이 明文은 乾隆 26년 辛巳, 즉 英祖 37년(1761) 11월 16일에 田主人 鄭仁桓이 高益謙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부모님의 두 산소를 이미 買受人의 밭에 썼으나 산소 값은 달리 변동할 길이 없기 때문에 先歸員의 流來田인 皮牟 3말 부치기로 영원히 갚아준다는 내용이다.

(32) 乾隆伍拾柒年 壬子 貳月貳拾柒日 高雲保處明文(30.5cm×32cm)

右明文事段 陽旨員 右人田 吾父主山坐後山價 山後粟種柒合付并以 割地以代給段 人浦東邊 高同而旨員處 牟伍斗付田庫 東北元處坤田 南任最長田 西小路 標內分明田庫乙 高雲保處 報給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與爲臥乎所日後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呈事

田主 夫成寬(手決)

筆執 李明漢(手決)

이 明文은 乾隆 57년 壬子, 즉 正祖 16년(1792) 2월 27일에 田主人 夫成寬이 高雲保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陽旨員의 買受人 밭에 있는 아버님의 산소 뒷편의 산소 값으로 산소 뒤의 粟種를 7홉 부치기를 아울러 割地하고, 代給은 人浦東邊에 있는 高同而旨員의 牟 5말 부치기로 영원히 갚아주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3) 嘉慶十五年 庚午 四月初十日 姜宗祿處明文(40cm×34.5cm)

右明文事段 矣身上年分 以身役將官薦債亦 禮條出處無路故 同人處 正木拾貳疋 貸出用之後 價本段 他無變通乙仍于 勢不得已 矣祖父掃祭田 所謂古景伊田 粟種柒升付只 四標段 東金成宅田 南買者田 北及西小路 四標分明田庫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同田本文記段 都許并付故 不得給之爲去乎 日後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許 弼(手決)

筆執 吳命觀(手決)

이 明文은 嘉慶 15년 庚午, 즉 純祖 10년(1810) 4월 초10일에 田主人 許弼이 姜宗祿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이 몸이 지난해에 身役인 將官으로 천거된 빛으로 禮條를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正木 12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값은 달리 변통할 수 없기에 하는 수 없이 祖父님의 掃祭田인 이른바 古景伊田 粟種 7되 부치기를 同人에게 영원히 팔아 버리되, 그 밭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4) 道光元年 壬午 四月二十七日 丁召史處明文(44cm×31cm)

右明文事段 吾矣子興連 罰役身役事 變通無路故 同姓姪女召史處 白木伍疋 貸出備後 價本段 吾矣衿得是如 山地堂員 牟種伍斗付 東李敏申田 西梁氏田 南姜宗戎田 北中兄田 四標分明田庫 及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 而日後 子孫族類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告官下呈事

田主 同姓三寸 丁德彬(手決)
筆執 林春榮(手決)

이 明文은 道光 2년 壬午, 즉 純祖 22년(1822) 4월 27일에 田主人 同姓三寸 丁德彬이 丁召史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문서에는 道光元年 壬午로 되어 있으나 壬午는 순조 22년에 해당하므로 干支를 따라 바로 잡는다. 내용은 “아들 興連의 罰役과 身役의 일을 변통할 길이 없으므로 同姓의 姪女 召史에게 白木 5필을 대출하여 마련한 뒤, 그 값은 내가 衿得한 山地堂員의 牟種 5말 부치기로 영원히 팔아 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밭과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5) 道光柒年 丁亥 十二月拾陸日 外三寸康日祿處明文(41cm×32.5cm)

右明文事段 以貧寒之所致 契活生長 實爲極難故 同人前 正木拾貳疋 貸下賣食之後 價本段 他無辦備之道故 矣外處衿給田 皮牟拾參付只 所謂巨門弓員 四標段 東與北金應準田 西金進卓田 南李宗禮田 標內分明田庫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都許載錄 不得與之爲去乎 日後 若有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券 下正憑考事

田主 許景日(喪不着)

筆執 姜景興(手 決)

이 明文은 道光 7년 丁亥, 즉 純祖 27년(1827) 12월 16일에 田主人 許景日이 外三寸 康日祿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貧寒한 소치로 契活生長이 실로 極難하므로 買受人에게 正木 13필을 대출하여 팔아먹은 뒤, 값은 달리 변통할 길이 없으므로 外家의 衿給田인 巨門弓員의 皮牟 13?부치기를 영원히 팔아 버리되, 本文記는 都許文에 載錄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6) 道光拾壹年 辛卯 八月初三日 李雲赫處明文(42cm×3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同人處 正木肆疋 貸下預用後 債報之道 他無變通乙仍于 吾矣買得田 在於農可水員 粟種參升付只是在 四標段 東吳受云田 西姜孝奉田 南大路 北李廷鵬田 標內分明田庫 不可不永永報給之意 并以文券成辭爲去乎日後 若有雜談之弊 則持此筆跡憑考是矣 本文記 並以許與 以此永久遵行事

· 田主 自筆執 姜宗興(手決)

이 明文은 道光 11년 辛卯, 즉 純祖 31년(1831) 8월 초3일에 田主人 姜宗興이 李雲赫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正木 4필을 貸下하여 미리 사용한 뒤, 빚을 값을 길을 달리 변통할 수 없으므로 나의 買得田인 農可水員의 粟種 3되 부치기를 문기를 작성하여 本文記와 함께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37) 道光拾貳年 壬辰 二月十一日 李雲赫處明文記(38.5cm×28cm)

右明文事段 昨年分 行商次出陸是如可 所得路費 俱爲見失故 各處負債 果無辨[變]通之勢故 同人處 白木柒疋用下後 價本段 衿下田 脯祭童山員 粟種貳升付只 東北元仁泰田 西小路 南林完福田 四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是矣 本文記設置 並爲許給爲去乎 日後 子孫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憑考事

田主 高濟楊(手決)

筆執 吳世宗(手決)

이 明文은 道光 12년 壬辰, 즉 純祖 32년(1832) 2월 11일에 田主人 高濟楊이 李雲赫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작년에 行商次 出陸하다가 所得한 路費를 함께 분실하였기 때문에 각처에 진 빚을 변통할 수가 없어서 買受人에게 白木 7필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衿下田인 脯祭童山員의 粟種 2되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리되, 本文記도 함께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38) 道光拾陸年 丙申 十二月二十六日 吳宗現處明文(39cm×42cm)

右明文事段 矣身四柱不吉 家夫早死 而勢無作農之勢中 今當人殺荒年 家率資生 變通無路乙仍于 不得已 矣舅父主 李夏成處買得田 下院里西南邊 加上伊洞員 皮牟拾參斗付只 四標段 東姜在仁田 西宋始達田 南姜宗發田 北姜宗興田 標分明田庫乙 同人處 決價正木貳拾肆疋貳拾尺後 白木拾陸疋半 及正粟柒石柒斗受之 而相論其時價 則正木壹疋 錢文伍兩 正木一疋 粟十一斗也 此田同宗現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族類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下正事

田主 吳 氏(右手寸)

筆執 金宗興(手 決)

이 明文은 道光 16년 丙申, 즉 헌종 2년(1836) 12월 26일에 田主人 吳氏가 吳宗現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이 몸의 四柱가 不吉한 데다가 남편이 일찍 사망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제 흉년을 당하여 家率의 생계를 꾸릴 방도를 달리 변통할 길이 없는 탓으로 부득이 시아버님이 李夏成에게 買得한 下院里 西南邊 加上伊洞員의 皮牟 13말 부치기를 買受人에게 正木 24필 20척으로 값을 정한 뒤 白木 16필 반 및 正粟 7석 7두를 받았는데, 서로 그 時價를 논의해 보았더니, 正木 1필은 錢文이 5냥이고 粟은 11말이었다. 이 밭을 買受人에게 本文記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39) 道光拾柒年 丁酉 參月初捌日 李宗林處明文(38cm×32cm)

右明文事段 當此歉荒之歲 生涯極艱故 迫不得已 同人處 正木拾疋 貸出資生後 價本段 他無變通處故 衿下田 所謂柳木洞員 皮牟伍斗付只 肆標段 東與南小路 西重山 北康允興田 標內分明田庫乙 永永報給於右貸出木價是矣 本文段 他田并付故 不得許與爲去乎 日後 若或有子孫族類中 相爭者則 以此文記憑考事

田主 李宗砥(手決)

筆執 鄭觀協(手決)

이 明文은 道光 17년 丁酉, 즉 헌종 3년(1837) 3월 초8일에 田主인 李宗砥가 李宗林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흉년을 당하여 생활이 극히 어려우므로 하는 수 없이 買受人에게 正木 10필을 대출하여 養生한 뒤, 그 값을 달리 변통할 수 없으므로 衿下田인 柳木洞員의 皮牟 5두 부치기를 대출한 正木 값으로 영원히 갚아주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0) 道光拾柒年 丁酉 捌月初捌日 金先良處明文(42cm×38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吾矣當此荒年 生涯無路乙仍于 勢不得已 衍[放]賣爲也 齊 此田段 九庫員 皮牟拾陸斗付只 四標段 東北小(路) 西李大榮田 南李上奉(田) 四標分明爲遺 其貸出後 價本段 正木拾參疋 準計奉[捧]上是遺 本文記段 都會卞入爲去乎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或有族類中 相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既分子李義煥文書水火

田主 李台好(喪不差)

筆執 金致連(喪不差)

이 明文은 道光 17년 丁酉, 즉 헌종 3년(1837) 3월 초8일에 田主인 李台好가 金先良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요용소치로 내가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하는 수 없이 九庫員의 皮牟 6말 부치기 값으로 正木 13필을 계산해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1) 道光貳拾貳年 壬寅 拾貳月貳拾伍日 侄子雲赫處明文(43cm×34cm)

右明文事段 吾凶歲 侄子處 正木參疋半貸用後 價本段 吾掃條 鷗石員 貳合內東壹片 牟種伍斗付只田 肆標段 北李廷鵬家坐田 東李敏新田 南元光甫田 肆標分明田庫乙 永爲侄子處 放賣爲去乎 日後 持此文相考事

田主 伯父 李(手決)

筆執 高漢奎(手決)

이 明文은 道光 22년 壬寅, 즉 헌종 8년(1842) 12월 25일에 田主人 伯父 李氏가 侄子 雲赫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흉년을 당하여 侄子에게 正木 3필 반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으로 나의 掃條인 鷗石貝의 두 파니 [片] 중, 동쪽 한 파니인 牟種 5두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2) 道光二十六年 丙午 二月二十四日 李遠翊處明文(37.5cm×30cm)

右明文事矣 子漢順之事 要用所致故 同人處 白木拾五疋貸用後 價本段 出處無路故 山地當員 皮五斗付 東敏申田 西李邦孝田 南姜宗戎田 北丁興卜田 標分明田庫乙 同人處 永爲放賣爲去乎 日後 若相詰之弊 則持本文記 以此憑考事

田主 自筆執 高濟良(手決)

이 明文은 道光 26년 丙午, 즉 헌종 12년(1846) 2월 24일에 田主人 高濟良이 李遠翊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아들 漢順의 일로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買受人에게 白木 15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山地當員의 皮(牟) 5두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3) 咸豐元年 辛亥 三月 日 李遠翊前明文(41.5cm×31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涯難堪故 右人前 白木參疋貸用後 他無報給之物故 土溝項員 金賁祿處相換田 皮牟壹斗付 四標段 東小路 西南金貴現田 北元義儉田 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 則以此憑考事

田主 姜奉玉(手決)

筆執 高謙鎮(手決)

元田主金東 病不能着 外孫奉玉代着

이 明文은 咸豐 원년 辛亥, 즉 철종 2년(1851) 3월에 田主人 姜奉玉이 李遠翊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가기가 난감한 까닭으로 買受人에게 白木 3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달리 갚아줄 물건이 없으

므로 金賁祿과 相換한 土溝項員의 皮牟 1말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附記에 원래의 田主인 金東이 病으로 手決할 수 없으므로 外孫인 奉玉이 대신 수결한다고 하였다.

(44) 咸豐參年 癸丑 參月貳拾捌日 李遠翊前明文(41.5cm×32.5cm)

右明文事段 吾奄遭祖父喪 過葬所入無路故 右人前 白木伍拾參疋貨用後 價本段 祖父主買得田 在於大靜下院境內 加上洞員 皮牟拾參斗付 四標 東趙東益田 西宋禮秀田 南姜雲彬田 北姜用儉田 標分明田庫 永爲放賣 而本文記并以 許與爲去乎 日後 子孫中 若有雜談 則持此文憑考事

田主 自筆執 吳相仁(喪不着)

이 明文은 咸豐 3년 癸丑, 즉 철종 4년(1853) 3월 28일에 田主인 吳相仁이 자필로 李遠翊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내가 갑자기 祖父喪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들어갈 비용이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白木 53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으로 조부님의 買得田인 大靜下院境內인 加上洞員의 皮牟 13말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넘겨버린다는 내용이다.

(45) 咸豐陸年 丙辰 五月初一日 康奉鎮處明文(44cm×27.5cm)

右明文事段 矣孫漢明 所謂刑房之任 所負官債 至于累百兩 則蕩賣家產 而不得盡報故 右人家 正木貳拾伍疋貨出報債後 價本段 他無變通故 仲子處衿給畝 撫仇奄伊員 租種壹斗付 四標段 東水洞 西池祥云畝 南金宗元畝 北高濟辰畝 標分明畝庫乙 永爲放賣是遣 本文段 他畝并付放 不得許給爲去乎 此後 若有相爭之端 則持此文記 憑考事

畝主 高瀛泰(手決)

筆執 高漢瑞(手決)

이 明文은 咸豐 6년 丙辰, 즉 철종 7년(1856) 3월 28일에 畝主인 高瀛泰이 康奉鎮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손자 漢明이 刑房의 職任 때 진 官債가 수백 냥에 이르니, 家產을 蕩賣하여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買受人에게 正木 25필을 대출하여 빚을 갚은 뒤, 그 값을 달리 변통할 수 없으므로 仲子

에게 衿給한 畝인 撫仇奄伊貝의 租種 1말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
기는 다른 논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6) 咸豐六年 丙辰 十月二十三日 李遠輝處明文(39cm×31cm)

右明文事段 孫子漢明 出債官錢 幾至數百兩 辦報末由之致 右人處 正木貳拾疋
貸用後 價本段 立庫川西邊員 貳拾片畝 租種壹斗柒升付只 東梁漢奉及高時祿畝
西與北水洞 南任宗植畝 四票分明永爲 報給爲乎矣 本文記段 不幸失火故 不得
許與是乎乃 日後 若有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憑考 下正事

畝主 高瀛泰(手決)

筆執 姜雲岐(手決)

이 明文은 咸豐 6년 丙辰, 즉 철종 7년(1856) 10월 23일에 畝主人 高瀛泰이
李遠輝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손자 漢明이 빚진 官錢이 수백 냥에
이르렀으나 辨濟하여 값을 수가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正木 20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을 立庫川 西邊員의 租種 1말 7되 부치기로 갚아주되, 본문기
는 불행히도 失火되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7) 咸豐柒年<丁巳> 拾月初捌日 李雲赫處明文(40.5cm×31.5cm)

右明文事段 寡矣身緊有要用處 右人處 白木貳拾貳疋貸用後 價本段 石宋李宗吉
處 衿下相換田 大浦寺基員 皮牟肆斗付 東高(공란)田 西李宗礪田 南許玉田 北
姜用雲田 標分明田庫 永爲放賣 日後 持此文憑考事

田主 李 氏(右手寸)

筆執 高謙鎮(手 決)

이 明文은 咸豐 7년 丁巳, 즉 철종 8년(1857) 10월 초8일에 田主人 李氏가
李雲赫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과부인 이 몸이 요긴하게 사용할 곳
이 있어서 買受人에게 白木 22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으로 石宋(지금
의 法遷)의 李宗吉에게 衿下한 相換田인 大浦寺基員의 皮牟 4말 부치기를 영
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8) 同治肆年 肆月初參日 李雲赫處明文(38.5cm×31cm)

右明文事段 寡矣身 緊有要用處 右人前 白木貳拾陸疋貸用後 價本段 石宋李宗吉處 衿下相換田 大浦寺基員 皮牟肆斗付 東姜廷儉田 西李宗礪田 南許玉田 北姜用云田 標分明田庫乙 永爲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 則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李 氏(右手寸)

證人 韓才用(手 決)

李弘集(手 決)

筆執 李光銀(手 決)

大浦永 (印, 3.5cm×8.3cm)

이 明文은 同治 4년, 즉 高宗 2년(1865) 4월 초3일에 田主인 李氏가 李雲赫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과부인 이 몸이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買受人에게 白木 26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으로 石宋의 李宗吉에게 衿下한 相換田인 大浦寺基員의 皮牟 4말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9) 同治六年 丁卯 十二月十一日 李遠翊處明文(38.5cm×29cm)

右明文事段 吾當此荒年 生涯無路故 右人處 白木陸疋貸用後 價報段 出處無路故 流來畝 道泉員 租種肆升付只伍片畝 四標段 東大川 西丁尙佑畝 南金起銀畝 北高致岑畝 標分明畝庫乙 永爲放賣爲去云[乎] 本文記段 都許在錄是乃 日後 若有子孫中 雜談之弊 則持此文記 憑考事

畝主 丁尙儉(手決)

筆執 姜用礪(手決)

이 明文은 同治 6년 丁卯, 즉 高宗 4년(1867) 12월 11일에 畝主인 丁尙儉이 李遠翊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白木 6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

므로 流來畝인 道泉員의 租種 4되 부치기, 다섯 파니 논을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0) 同治七年 戊辰 三月初五日 李遠翊處明文(39cm×32.5cm)

右明文事段 矣當此黃[荒]年 生道無路故 右人處 白木拾捌疋貸用後 價本段 吾矣妻家衿給田 柳木屈員 皮牟伍斗付只 四標段 東西南小路 北康仁秀田 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以代 本文記段 他田並付爲去云[乎] 若有子孫中 雜談之弊以[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呈事

田主 自筆執 姜義吉(手決)

이 明文은 同治 7년 戊辰, 즉 고종 5년(1868) 3월 초5일에 田主人 姜義吉이 자필로 李遠翊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白木 18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으로 妻家の 衿給田인 柳木屈員의 皮牟 5말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1) 同治七年 戊辰 十一月初七日 李遠翊處明文(39.5cm×30.5cm)

右明文事段 當此大荒 資生無路故 道亦泉伊員 父母與己[忌]祭畝 租種合陸升付 右人處 決價木伍疋 而報給是矣 四標段 東買者畝 西南金己銀畝 北丁尙祿畝 標分明畝庫 永爲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 則持此憑考事

畝主 丁興福(手決)

筆執 金麗圭(手決)

證人 丁興祿(手決)

이 明文은 同治 7년 戊辰, 즉 고종 5년(1868) 11월 초7일에 畝主人 丁興福이 李遠翊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道亦泉伊員의 父母와 자신의 祭畝인 租種 6되 부치기를 買受人에게 무명 5필로 가격을 정하여 갚아준다는 내용이다.

(52) 同治八年 己巳 四月二十二日 姜氏處明文(40.5cm×30.5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出處無路故 右人處 正木二疋推貸後 價本段 里內員 皮牟一斗付只 四標 東小路 西小路 南小路 北三寸家坐田 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是되[矣] 本文記都許在綠[錄]故 不得許給許與乎 日後 子孫中 若有雜談弊 則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自筆執 林時成(喪背着)

이 明文은 同治 8년 己巳, 즉 高宗 6년(1869) 4월 22일에 田主人 林時成이 자필로 姜氏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흥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正木 2필을 대출한 뒤, 그 값으로 里內員의 皮牟 1말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도허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3) 同治九年 庚午 三月初四日 李遠翊處明文(39cm×34cm)

右明文事段 當此大荒 生道無路故 右人處 白木伍拾尺貸用後 價本段 眞木洞山員 流來田 粟種柒升付只 四標 東洞山 西南大路 北姜用礮田 表[標]分明田庫 永爲放賣是矣 本文記都許載錄 不得許與爲去乎 日後 若有雜談 則持此憑考事

自筆執 田主 任應秀(手決)

이 明文은 同治 9년 庚午, 즉 高宗 7년(1870) 3월 초4일에 田主人 任應秀가 자필로 李遠翊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흥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白木 50척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으로 眞木洞山員의 流來田인 粟種 7되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도허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4) 同治十二年<癸酉> 二月二十二日 李遠輝處明文(40.5cm×30.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同人處 白木二十四疋貸用後 價本段 自起買得 別伊川岳 東南洞員 牟種五斗付 四標段 東北姜用劔田 南玄日彬田 西北李希彥田 標分明 并以本文記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幣[弊]是去等 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金致潤(手決)

筆執 崔晟麟(手決)

이 明文은 同治 12년 癸酉, 즉 高宗 10년(1873) 2월 22일에 田主人 金致潤이 李遠輝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用途소치로 買受人에게 白木 24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으로 자신이 산 別伊川岳 東南洞員의 牟種 5말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55) 光緒三年 丁丑 三月二十七日 李遠翊處明文(40cm×27.5cm)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故 右人處 白木伍拾疋貸用後 價報段 出處無路故 東海水員 拾柒片畝 粗[租]種貳斗付內 東邊伍升付 父母祭條 壹斗伍升付 買得畝 肆標段 東西北水洞 南李尙恒畝 標外餘田壹斗付 標段 北宋興玉田 田畝標分明庫 乙 永爲放賣是矣 本文記都許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憑考事

畝主 金宗寬(手決)

筆執 姜命老(手決)

이 明文은 光緒 3년 丁丑, 즉 高宗 14년(1877) 3월 27일에 畝主人 金宗寬이 李遠翊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用途소치로 買受人에게 白木 50필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東海畝員의 17片[속칭 파니] 논 租種 2말 부치기 내에 父母의 祭條인 東邊 5말 부치기와 買得畝인 1말 5되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도허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6) 光緒四年 戊寅 五月初一日 姜氏處明文(39cm×29cm)

右明文事段 矣要用所故 右人前 白木十五疋半貸用後 價本段 矣買得田 承去水員 皮牟四斗付只 四票段 東高性鳳田 西南小路 北高(공란)田 票[標]分明田庫 乙 本文記并以 許級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 則持此文 憑考事

田主 梁景重(手決)

筆執 鄭智輝(手決)

이 明文은 光緒 4년 戊寅, 즉 高宗 15년(1878) 5월 초1일에 田主人 梁景重이 姜氏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白木 15필 반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으로 내가 산 밭인 承去水員의 皮牟 4말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넘겨버린다는 내용이다.

(57) 癸未 四月初九日 李遠翊處明文(35.5cm×32.5cm)

右明文事段 木一疋貸用而價報段 橫(橫?)木田員 牟種一斗付只 東賣者田 西北小路 南李才永田 四標分明田庫 永爲放賣 日後 更言則 以此相考事
田主 筆 金麗精(手決)

이 明文은 癸未, 즉 高宗 20년(1883) 4월 초9일에 田主人 金麗精이 자필로 李遠翊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무명 1필을 대출하여 사용하고, 그 값으로 橫木田員의 牟種 1말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58) 光緒十八年 壬辰 五月初四日 姜周八處明文(37cm×28cm)

右明事段矣 要用所致故 右人處 錢文參拾捌兩貸用後 價報段 出處無路故 長洞山員 牟種貳斗伍升付 四標段 東李氏田 西姜才性田 南李氏田 北任戊逢田 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 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高性應(手決)
筆執 吳處信(手決)

이 明文은 光緒 18년 壬辰, 즉 高宗 29년(1892) 5월 초4일에 田主人 高性應이 姜周八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錢文 38냥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長洞山員의 牟種 2말 5되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59) 建陽二年<丁酉> 正月十八日 高漢允處明文(35.5cm×27.5cm)

右明文事段 矣父母生時 白木貳疋貳拾尺貸用後 出處未報 當此時 東水洞員 牟種貳斗付只 四標段 東金尙用田 西李才白田 南金庚田 北高贊弘田 四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是 本文記段并以 許給爲去乎 日後 若有更口 則持此文記相考事

田主 自筆執 林漢成(手決)

이 明文의 建陽 2년은 없으므로 丁酉年인 광무 원년(1897)의 착오이다. 따라서 이 해 정월 18일에 田主人 林漢成이 자필로 高漢允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부모님 생시에 白木 2필 20척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을 마련하여 갚지 못하였는데, 이 때를 당하여 東水洞貝의 牟種 2말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0) 建陽二年 丁酉 十一月二十八日 李才連處明文(36cm×28cm)

右明文事段 矣急有用處故 外叔處 錢文壹百兩貸用後 價報段 出處無路故 母任 衿給畚 道欲泉貝 畚種陸升付 四標段 東買者畚 西南金受得畚 北丁仁太畚 四標 分明畚庫乙 永爲放賣爲 本文段 并以許絡是乎乃 日後 若有雜談 則持此憑考事
畚主 自筆 邊仁壽(手決)

이 明文도 建陽 2년이 없으므로 丁酉年인 광무 원년(1897)의 착오이다. 따라서 이 해 11월 28일에 畚主人 邊仁壽가 자필로 李才連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내가 긴급히 사용할 곳이 있어서 外叔에게 錢文 1백 냥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衿給畚인 道欲泉貝의 畚種 6되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1) 光武八年 甲辰 正月初九日 李在連處明文(38cm×26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道無路故 右人處 錢文捌拾伍兩貸用後 價報段 出處無路 長洞山貝 車種貳斗伍升付 四標 東姜己吉田 西姜應甫田 南姜辰吉田 北任戊逢田 四標分明田庫乙 永爲放賣是矣 本文記并以 許給爲去乎 日後 若有雜談 則持此憑考事

警民長 李(手決)

大浦

 田主 姜周八(手決)
(印, 5cm×8.5cm) 筆執 李遠敏(手決)

이 明文은 光武 8년(1904) 甲辰 정월 초9일에 田主人 姜周八이 李在連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買受人에게 錢文 85냥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長洞山員의 牟種 2말 5되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2) 光武八年 甲辰 二月初四日 李在連處明文(38cm×24cm)

右明文事段 矣緊有用處故 右人處 錢文肆拾伍兩貸用後 價報段 出處無路故 東水洞童山員 流來田 皮牟參斗付只 標東金常庸田 西李達敏田 南金贊圭田 北高贊弘田 標分明田庫乙 永爲放賣是矣 本文記段 不幸闕失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若有更言之端 則持此憑考事

田主 高處洪(喪不着)

筆執 李載廈(手 決)

警民長(手決) 人浦 (印, 5cm×8.5cm)

이 明文은 光武 8년(1904) 甲辰 2월 초4일에 田主人 高處洪이 李在連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내가 긴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買受人에게 錢文 45냥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東水洞童山員의 流來田인 皮牟 3두 부치기를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불행히도 분실하여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63) 光武八年 丙午 二月十日 吳氏處明文(30.5cm×24.5cm)

右明文事段 急有用處故 右人處 錢文壹佰拾兩貸用後 價報段 出處無路故 小洞山員 買得田 牟種伍斗付 四標 東高京甫田 西小路 南梁仁伯田 北金殷烈田 標分明田庫乙 永永放賣是矣 本記段并而許給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 則持此文記 相考事

田主筆 李基亨(手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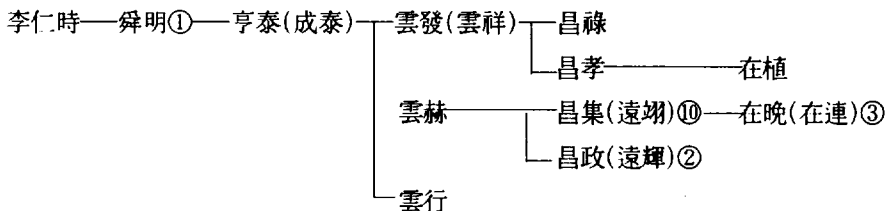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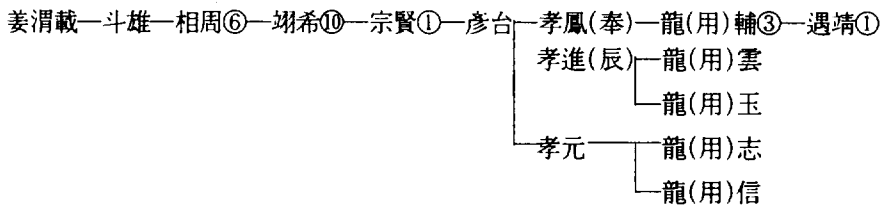
이 明文의 光武 8년(1904)은 干支가 甲辰이고, 丙午는 光武 10년(1906)에 해당하므로 간지를 따라 바로잡는다. 곧 光武 10년 2월 10일에 田主人 李基亨이 자필로 吳氏에게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書이다.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

서 買受人에게 錢文 110냥을 대출하여 사용한 뒤, 그 값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小洞山員의 買得田인 牟種 5말 부치기를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Ⅲ. 綜合分析

우선 전답매매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家系圖를, 두 집안에 전해 오는 戶口單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다. 이름 옆의 숫자는 전답을 買受한 件數이며 이 건수에 의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姜氏宅에서는 5인이 21건의 전답을 매수하였고, 李氏宅에서는 4인이 16건의 전답을 매수하였다. 그 나머지 姜氏宅의 7건, 李氏宅의 19건은 다소 예외는 있겠지만, 두 집안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매수하였던 문서로, 이는 賣渡人이 전답의 賣渡와 함께 買受人에게 넘겨주는 本文記(舊文記)일 것이다. 즉 두 집안 사람들이 전답을 매수할 때, 賣渡人으로부터 각각 넘겨받은 본문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家系圖〉



다음 <표 1>과 <표 2>는 두 집안의 전답문서를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姜氏宅 文書

	年 月	賣渡者	買受者	賣渡事由	借用品目	取得經緯	地 境	作物	面積	本文記
01	경종 3(1723) 5	元萬寬	姜德鳴	要用所致	木輪 4疋	買得田	北童山員	皮牟	1섬	
02	영조 4(1728) 2	奴厚連	姜相周	要用所致	正木 50尺	祖上傳來	汝朴只員	皮牟	4말	
03	영조 9(1733) 5	婢上禮	姜相文	要用所致	捌升木 50尺	祖上流來	汝朴只員	皮牟	7말	他田并付
04	영조 11(1735) 11	高次三	姜相周	喪債	正木 45尺	祖上流來	風浦員	皮牟	7말	
05	영조 12(1736) 2	奴德山	姜相周	同色條	壯雌馬 1匹	父邊流來	東古水員	皮牟	1섬	他田并付
06	영조 17(1741) 1	婢衣良	安次石	喪債榮價	正木 3疋	舅邊衿得	開要堂員	粟種	15되	他田并付
07	영조 22(1746) 5	金信白	姜相周	騎馬	騎馬 1匹	妻邊衿得	汝朴只員	皮牟	13말	
08	영조 27(1751) 2	高世祥	姜相周	要用所致	角鹿皮 1令	妻衿得田	庫要堂員	牟種	5되	
09	영조 33(1757) 7	元武發	姜相周	負債	正木 4疋	買得田	佛木堂員	牟種	15되	
10	영조 38(1762) 4	姜老聖	姜益希	要用所致	正木 4疋	外片流來	立石員	粟種	4되	他田并付
11	영조 38(1762) 12	奴次星	姜益希	大棺子板	正木 50尺	菜坐田	—	皮牟	4말	
12	영조 40(1764) 2	玄 氏	姜益希	要用所致	正木 3疋	買得田	北童山員	皮牟	1섬	
13	영조 41(1765) 2	李起白	金重起	身役米	正木 2疋	姓邊衿得	西川勸格員	粟	7되	
14	영조 41(1765) 6	高召史	姜益希	要用所致	正木 2疋	—	方下浦員	皮牟	5말	
15	영조 41(1765) 6	奴次星	姜益希	還上	正木 2疋	父白起田	沙斤非幕基員	皮牟	3말	
16	영조 42(1766) 7	姜進弼	姜益希	要用所致	무명 8尺	—	沙近非於員	牟種	13되	
17	영조 44(1768) 2	梁廷德	姜益希	要用所致	正木 4疋	相換田	廣伯員	皮牟	1섬	本文記并以
18	영조 46(1770) 6	池召史	姜益希	凶年	正木 4疋半	祖母別給	開要水員	租種	5되	
19	영조 47(1771) 11	元 氏	姜益希	凶年	壯雄牛 1首	衿得田	別老川員	牟種	1섬	他田并付
20	정조 3(1779) 3	姜益成	姜益希	聚有用處	正木 2疋	衿得田	長童山員	皮牟	9말	他田并付
21	정조 18(1794) 2	高永春	姜宗賢	凶年	正木 3疋	兄衿付田	西泉間員	粟種	7되	紛失
22	철종 10(1759) 2	李京震	姜用輔	要用所致	白木 6疋	妻家衿得	不毛巨員	皮牟	4말	
23	고종 3(1866) 2	李邦進	姜用輔	要用所致	白木 30疋	流來田	水東山	牟種	6말	他田并付
24	고종 5(1868) 2	梁春奉	姜用輔	要用所致	白木 3疋半	買得田	無近浦員	牟種	2말	
25	고종 12(1875) 4	金光化	姜應仁	聚有用處	白木 6疋半	流來田	不毛巨員	牟種	4말	
26	光武 2(1898) 6	吳起榮	任光秋	要用所致	錢文 60兩	—	古馬金員	牟種	2말	本文記并以
27	光武 8(1904) 12	任光秋	姜遇端	聚有用處	錢文 80兩	白起田	古馬金員	牟種	2말	本文記并以
28	隆熙 1(1907) 3	姜基周	四 寸	負債	錢文 170兩	流來田	里內員	牟種	17되	本文記并以

* 05) 正木 2필, 07) 價木 20척, 08) 正木 20척, 19) 正木 1필10척이 포함됨

<丑 2> 李氏宅 文書

	年 月	賣渡者	買受者	賣渡事由	借用品目	取得經緯	地 境	作物	面積	本文記
29	英祖 23(1747)	3 奴順完	玄萬晃	凶年	正木 1疋半	買得田	開要堂員	皮牟	11畓	本文記并以
30	英祖 33(1757)	6 李相成	李舜明	凶年	正木 2疋	衿得番	江汀箕水員	租種	5畓	
31	英祖 37(1761)	11 鄭仁桓	高益謙	喪債	— —	流來田	先歸員	皮牟	3畓	
32	正祖 16(1792)	2 夫成寬	高雲保	喪債	— —	—	高同而旨員	牟	5畓	他田并付
33	純祖 10(1810)	4 許 弼	姜宗祿	將官禮株	正木 12疋	掃祭田	古景伊田	粟種	7畓	他田并付
34	純祖 22(1822)	4 丁德彬	丁召史	罰役身役	白木 5疋	衿得	山地堂員	牟種	5畓	他田并付
35	純祖 27(1827)	12 許景日	康日祿	貧寒	正木 13疋	衿給田	巨門弓員	皮牟	13	他田并付
36	純祖 31(1831)	8 姜宗興	李雲赫	要用所致	正木 4疋	買得田	農可水員	粟種	3畓	本文記并以
37	純祖 32(1832)	2 高濟揚	李雲赫	行高負債	白木 7疋	衿下田	脯祭蓋山員	粟種	2畓	本文記并以
38	憲宗 2(1836)	12 吳 氏	吳宗現	凶年	— —	買得	加上伊洞員	皮牟	13畓	本文記并以
39	憲宗 3(1837)	3 李宗砥	李宗林	凶年	正木 10疋	衿下田	柳木洞員	皮牟	5畓	他田并付
40	憲宗 3(1837)	3 李台好	金先良	要用所致	正木 13疋	—	九庫員	皮牟	6畓	
41	憲宗 8(1842)	12 李 氏	李雲赫	凶年	正木 3疋半	掃株	鴉石員	牟種	5畓	
42	憲宗 12(1846)	2 高濟良	李遠翊	要用所致	白木 15疋	—	山地當員	皮	5畓	
43	哲宗 2(1851)	3 姜奉玉	李遠翊	凶年	白木 3疋	相換	土溝項員	皮牟	1畓	
44	哲宗 4(1853)	3 吳相仁	李遠翊	祖父喪	白木 53疋	買得田	下院加上洞	皮牟	13畓	本文記并以
45	哲宗 7(1856)	3 高瀛泰	康奉鎮	官債	正木 25疋	衿給番	撫仇老伊員	租種	1畓	他田并付
46	哲宗 7(1856)	10 高瀛泰	李遠輝	官債	正木 20疋	—	立庫川員	租種	17畓	失火
47	哲宗 8(1857)	10 李 氏	李雲赫	聚有用處	白木 22疋	相換田	大浦寺基員	皮牟	4畓	
48	高宗 2(1865)	4 李 氏	李雲赫	—	白木 26疋	相換田	大浦寺基員	皮牟	4畓	
49	高宗 4(1867)	12 丁尙儉	李遠翊	凶年	白木 6疋	流來番	道泉員	租種	4畓	他田并付
50	高宗 5(1868)	3 姜義吉	李遠翊	凶年	白木 18疋	衿給田	柳木屈員	皮牟	5畓	他田并付
51	高宗 5(1868)	11 丁興福	李遠翊	凶年	早噶 5疋	祭番	道亦泉伊員	租種	6畓	
52	高宗 6(1869)	4 林時成	姜 氏	凶年	正木 2疋	—	里內員	皮牟	1畓	他田并付
53	高宗 7(1870)	3 任應秀	李遠翊	凶年	白木 50尺	流來田	眞木洞山員	粟種	7畓	他田并付
54	高宗 10(1873)	2 金致潤	李遠輝	要用所致	— —	買得	別伊川岳	牟種	5畓	
55	高宗 14(1877)	3 金宗寬	李遠翊	要用所致	白木 50疋	祭·買	東海番員	租種	2畓	他田并付
56	高宗 15(1878)	5 梁景重	姜 氏	要用所致	— —	買得田	承去水員	皮牟	4畓	本文記并以
57	高宗 20(1883)	4 金麗精	李遠翊	—	早噶 1疋	—	楸木田員	牟種	1畓	
58	高宗 29(1892)	5 高性應	姜用八	要用所致	錢文 38兩	—	長洞山員	牟種	25畓	
59	光武 1(1897)	1 林漢成	高漢允	父母生時	白木 90尺	—	東水洞員	牟種	2畓	本文記并以
60	光武 1(1897)	11 邊仁壽	李才連	聚有用處	錢文 1百兩	衿給番	道欲泉員	番種	5畓	
61	光武 8(1904)	1 姜周八	李在連	凶年	錢文 85兩	—	長洞山員	牟種	25畓	本文記并以
62	光武 8(1904)	2 高處洪	李在遠	聚有用處	錢文 45兩	流來田	東水洞員	皮牟	3畓	紛失
63	光武 10(1906)	2 李基亨	吳 氏	聚有用處	錢文 110兩	買得田	小洞山員	牟種	5畓	本文記并以

* 10) 正木 24필 20척을 받고 賣渡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文記의 거의 대부분이 전답의 가격을 책정하여 放賣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賣渡者가 買受人으로부터 사전에 綿布 따위를 빌려 적절히 사용한 뒤, 이를 달리 값을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전답으로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평균 時價를 산출하기도 용이하지가 않다(〈표 1〉과 〈표 2〉의 借用品目 및 전답의 면적 참조). 또한 이 글에서도 토지의 교환수단으로 錢文(常平通寶)이 사용된 것은 高宗代 후반기부터였다. 그 이전은 正木(文記에 따라서는 白木 등으로 기재됨)이 주로 사용되었다.

〈표 1〉·〈표 2〉의 本文記(舊文記)의 欄에 本文記并以란 한 것은, 전답을 방매할 때 본문기도 新文記와 함께 넘겨주는 경우이다. 賣渡되는 전답이 본문기 외에, 分財文記인 都許文 등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도 신문기와 함께 넘겨주는 경우가 있었다. 또 他田并付라 한 것은 本文記를 買受人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를 기록한 것으로, 賣渡하는 밭이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대체로 전답매매에 있어서 賣渡人은 그 權原을 증명하기 위해 전답을 매도할 때 본문기도 新文記에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 본문기에 다른 전답, 즉 賣渡 이외의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본문기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내용을 신문기에 기재한 것이다. 본문기는 동일 전답이 앞서 매매될 때에 賣渡人와 買受人 사이에 작성되었던 문기를 말하며, 이에 비해 다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새로 작성되는 문기를 신문기라 한다.

더욱이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전답매매문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들에 의해 자유로이 작성되어 何等 官府의 간섭을 받지 않았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의 관념이 발달함에 따라 高宗代 중반 이후부터 매매문기의 公信用을 높이기 위해 所在地 警民長의 手決이나 里印을 받은 文記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 3〉은 전답매매가 이루어진 시기를 上代와 月別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姜氏宅의 경우, 英祖代에 총 18건의 매수가 이루어졌고, 李氏宅의 경우, 이 보다는 아주 늦은 시기인 高宗代에 많이 이루어졌다. 월별로는 2,3월(음력)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春窮期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3>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光武	計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姜氏宅	1	18	2	☆	☆	1	3	3	28	1	10	2	2	3	4	2	☆	☆	☆	2	2	28
李氏宅	☆	3	1	5	5	5	11	5	35	2	6	9	5	2	1	☆	1	☆	2	3	4	35
計	1	21	3	5	5	6	14	8	63	3	16	11	7	5	5	2	1	☆	2	5	6	63

* 光武는 甲午更張 이후이다.

<표 4>는 전답의 賣渡事由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要用	凶年	喪債	負債	官債	同色	還上	騎馬	禮條	身役	貧寒	行商	計
姜氏文書	17	4	2	2	☆	1	1	☆	☆	☆	☆	☆	28
李氏文書	12	12	3	2	1	☆	☆	1	1	1	1	1	35
計	29	16	5	4	1	1	1	1	1	1	1	1	63

① 要用은 곧 要用所致로 총 29건인데, 매매사유가 가장 애매한 경우이다. 개중에는 緊有用處로 표기된 것도 있다. 한 예를 들면, 요용소치로 買受人에게 角鹿皮 1승을 빌려쓰고 牟種 5되 부치기를 파는 경우가 있었다(문기번호 8).

② 흉년의 경우, 殺年 등으로도 표기되고 있으며, 이 때 身役米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買受人에게 正木 등을 빌려 요긴하게 사용한 뒤, 그 값을 갚기 위해 밭을 파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문기번호 13),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자, 買受人에게 正木을 빌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買受人으로부터 正木 3필을 빌린 뒤, 正木 1필 반은 兄嫂가 所食하고 15척은 자신의 墓坐田 값으로 갚는가 하면, 그 나머지 正木 20척은 長姪子가 所食하도록 빌린 正木을 나누어 용도를 정한 뒤, 그 값을 갚기 위해 밭을 팔고 있었다(문기번호 21). 또 흉년을 당하여 빌어먹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買受人에게 正木을 빌렸다(문기번호 29), 혹은 흉년을 당하여 수두룩한 食口를 살리기 위해 正木을 買受人에게 빌렸다(문기번호 30) 밭으로 갚는 경우가 있었

으며, 四柱가 不吉한 데다가 남편이 일찍 사망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인데, 흉년을 당하여 家率의 생계를 꾸릴 방도를 달리 변통할 길이 없는 탓으로 부득이 시아버님이 買得한 皮牟 13말 부치기를, 買受人에게 正木 24필 20척으로 값을 정한 뒤 白木 16필 半과 正粟 7섬 7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 때 서로 그 時價를 논의해 보았더니, 正木 1필은 錢文이 5냥이고 粟은 11말이었다고 하였다(문기번호 38).

③ 官債의 경우, 孫子가 刑房의 職任 때 진 官債 수백 냥을 갚기 위해 家産을 蕩賣하여도 다 값을 수가 없어서 買受人에게 正木을 대출하는 경우(문기번호 45), 孫子가 빚진 官錢 수백 냥을 辨濟할 길이 없어서 買受人에게 正木을 대출하는 경우가 있었다(문기번호 46). 물론 이 때에도 받으로 빚을 갚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 生時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받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었다(문기번호 59).

④ 喪債는 買受人이 父親喪을 당하자 賣渡人의 밭에 산소를 마련하여 장사를 지낸 뒤, 그 밭을 사버리는 경우가 있었고(문기번호 4), 男便喪을 당하였을 때 사용한 護喪用 물건과 墓基(墓地) 값을 갚기 위해(문기번호 6), 夫人의 棺子板 값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문기번호 11), 부모님의 산소를 이미 買受人의 밭에 쓰고 그 산소 값을 갚기 위해(문기번호 31), 祖父喪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들어갈 비용을 빌려 쓴 뒤(문기번호 44), 그 값을 토지로 갚는 경우가 있었다. 喪葬은 朝鮮時代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儀禮였고, 또 가장 엄격히 施行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자연히 多額이 요구되었다. 특히 조선 사회에 있어서 墓地의 위치는 風水說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선정은 그 만큼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⑤ 同色은 곧 同色馬로, 이를테면 八所場의 馬牧子로서 同色條로 買受人에게 壯雌馬 1필을 정목 2필로 값을 정하고 꾸어서 官府에 바친 뒤, 그 값을 갚기 위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밭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문기번호 5).

⑥ 官으로부터 허다하게 꾸어 먹은 還上[환자]를 갚기 위해 買受人으로부터 正木 등을 빌려 쓴 뒤, 그 값으로 아버지가 買得한 밭을 파는 경우가 있었다(문기번호 15). 還上[환자]는 농민들이 春窮期에 司倉의 곡식을 빌려먹고 가을 수확이 끝난 뒤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갚는 곡식이다.

⑦ 武士로서 騎馬가 없기 때문에 買受人에게 騎馬 1필을 받고, 그 값으로 밭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었다(문기번호 7).

⑧ 身役으로 官府에 천거된 뒤, 禮條를 마련하기 위해(문기번호 33), 또는 아들의 罰役과 身役을 변통하기 위해 白木을 대출하였다가(문기번호 34) 밭으로 갚는 경우가 있었다. 禮條는 謝禮의 뜻을 표하기 위해 禮로 주는 돈이나 물건인 듯하다. 罰役은 죄나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벌로 시키는 勞役이며, 身役은 백성들이 나라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徭役으로서, 이를 면제받는 대신에 身布라 하여 綿布 따위를 바쳤었다.

〈표 5〉는 전답의 취득경위를 정리해 본 것이다.

〈표 5〉

	衿得	傳來	買得	相換	祭條	別給	未詳	計
姜氏文書	10	7	5	1	1	1	3	28
李氏文書	8	4	6	3	5	☆	9	35
計	18	11	11	4	6	1	12	63

① 衿得[깃득]은 分財 때에 遺産의 몫을 받는 것으로, 그 대부분이 田畝이었다. 따라서 이를 衿得田·衿得畝·衿下田·衿下畝이라 표현한 외에, 對象에 따라서는 舅邊衿得, 妻邊衿得, 外片衿得 姓邊衿得, 夫衿得, 仲兄衿得, 妻家衿得 등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② 傳來는 조상 대대로 전해 오는 것을 뜻하며, 본 文記들에서는 祖上傳來·祖上流來, 혹은 流來 등으로 표기되고 있었다.

③ 買得은 글자 그대로 산 田畝, 즉 買得田·買得畝 등으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自起田도 매득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글자 그대로 당사자가 새로 일군 밭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④ 相換은 彼此 편의에 따라 서로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전답의 경우, 彼此 거리가 멀어서 경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밭과 바꾸는 경우 등 교환 조건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답도 원래는 傳來나 買得·衿

得·別得 등을 통해 얻어진 밭일 것이다.

⑤ 祭條는 掃祭條·掃墳條 등으로도 표기되며, 조상에 대한 奉祀를 목적으로 分財 때에 주로 설정되는 전답이다. 別給은 婚姻이나 科擧及第, 生日, 得男 등 慶事가 있을 때에 특별히 지급되는 전답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의 財主나 對象(姻戚關係)의 범위가 넓다.

⑥ 未詳은 田畚賣買文記에 표기가 안된 경우이다.

맺 음 말

이상에서 大浦里 일대의 田畚賣買文記와 관련된 姜氏宅과 李氏宅 두 집안의 문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기에 나타난 양상은 필자가 지금까지 발표한 연구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지금까지 필자가 연구해온 결과를 참고논문으로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전답의 거의 대부분이 사전에 綿布 따위를 빌려쓰고 이를 갚기 위해 부득이 전답으로 넘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빌린 면포의 수량을 전답의 면적과 비교할 때, 전답의 값은 대출한 면포 값보다 더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대출한 면포의 수량과 전답 면적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조선 후기의 전답문기는 당시의 사회문제, 특히 농촌사회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不可缺한 것이다. 또한 이 점에서 田畚文記의 연구는 社會經濟史上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전답매매문기를 통하여 당시 사회의 토지소유의 관념은 물론, 교환수단의 변화, 즉 화폐유통의 시기와 재배작물의 추이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논문〉

- 1993, 「朝鮮後期 濟州田畓文記의 研究」 《耽羅文化》 13.
1994,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耽羅文化》 14.
1996, 「朝鮮後期 濟州島 土地賣買의 實狀」 《耽羅文化》 16.
1997, 「朝鮮後期 濟州地方 分財文記의 研究(I)」 《耽羅文化》 18.
1998, 「朝鮮王朝時代の濟州島での土地賣買」 《地理》 43-5. 東京.
1998,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畓文記의 研究」 《耽羅文化》 19.
1998, 「朝鮮後期 濟州地方 別給文記의 研究」 《濟州島史研究》 7.
1999, 「朝鮮後期 濟州地方 田畓賣買文記의 研究(I)」 《耽羅文化》 20.
2000, 「17·8세기 濟州地方 分財文記의 研究」 《古文書研究》 16·17.